

## 혼인권장정책 예고화 그리고 혼례문화 흐름

### Contemporary social policy, family welfare program & marital culture trends—the case of *'Hanhak-chon village'*

박 혜 인(계명대학교)

#### 문제의 제기:여성가족사회복지 변화환경

우리사회 산업화과정은 조선후기 이후 일제강점기 거쳐 2차대전 종전된 후, 다시 한국전쟁을 겪고 1960년대 제 2, 3차 산업발전이 급진전되는 과정에서 세계 그 어느 나라와도 비교하기 어려운 정도의 가파른 변화 이른바 압축성장기를 겪고 오늘에 이르른 바, 이 여파는 사회경제정치 물론 가정생활에 이르기까지 큰 부담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밀레니엄 21 세기 전후로 하여 지구촌 곳곳 국가 발전단계에 따라 겪는 속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어느 지역국가일지라도 피할 길 없는 변화과정과도 연관된다.

한국사회의 인구구조는 종래 농경사회 피라미드형에서 종모양[鐘形] 산업사회 형태를 거쳐 2020년경 항아리형태 후기산업사회 복지국가형으로 변모될 것이다. 전후세대가 노인인구로 편입되기 시작,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 2000년 7.1%, 2006년 9.8%, 2018년 14% 高齡社會(Aged Society)]에서 우리나라의 혼인율을 살펴보면 1960년 7.5%, 1980년 10.6% 2000년 7.0%의 수치를 보여 혼인율은 3% 정도의 부침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오고 왔다. 반면 혼인 대비 이혼비율은 1960년 3.8%, 1980년 5.9%, 2000년도 35.9%로서 IMF 이후 급격하게 상승하여 한국사회 가정생활 변화의 단면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에 관련 평균수명을 보면 1971년 62.3세, 1991년 71.7세이며 2010년 78.8세로 추산된다. 성별로 살펴보면, 1971년[남:59.0세 여:66.1세], 1991년[남:67.7 여:75.9], 2006년[남:74.4 여:81.2]로 나타나 공중보건위생 향상, 유아사망을 저하 곧 의학발전 함께 전반 생활변모를 반영하고 있다. 한편 노인인구 성비불균형은 고령일수록 더욱 심하여진다. 여성노인이 평균적으로 오래 살며, 배우자없시 혼자사는 비율이 이에 따라 증가한다. 약 7년 남녀 평균수명의 차이, 그리고 혼인 시 남녀 연령의 차이 및 남녀노인 재혼가능성의 차이로 인하여 유배우자율은 달라진다. 남성노인의 유배우자율이 87.2%, 여성노인의 유배우자율이 36.6%(2006년)이다. 여성노인은, 남성노인과 비교하여 배우자없시 홀로사는 기간이 평균 10년정도 예측된다. 한편 출산율의 급감 현실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60년 6.0, 1980년 2.83, 2000년 1.47, 2001년 1.30, 2002년 1.17, 2006년 현재 1.09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이른바 대가족 확대가족 직계가족으로 칭하는 노부모 함께 부모자녀 동거하는 삶을 이념적으로 지향하는 조선후기전통가족이 줄어들고 부모자녀 함께사는 부부가족 핵가족이 지배적인 가족모형으로 여겨지던 산업화과정 거쳐, 최근 1인가구 1세대가족 노인단독가구 증가, 결혼이민자가족 및 외국인가족[탈북가족 포함]노동자가족 증가 등의 현실이 주목해야할 정도의 가족사회복지 환경 변화 잣대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러한 전환기 현실 변화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사회적 준비 방제시스템구축이 미흡하였다. 한국사회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의 실태조사 및 대응준비교육프로그램을 일찍이 마련하지 못하여 복지행정서비스 전달체계 준비는 역부족이었다. 정부에서는 국가차원의 전략과 비전을 준비하지 못한 채 급격한 복지국가행정 실천이라는 현정부정책추진 지침에 부응 지방정부 개별 부서차원의 응급처방에 의존하여 해결해야하는 상황도 전개되고 있다. 날로 급변하는 가족사회변화 현실에 다양한 가족이 처한 가족문제 대응 대책을 수립, 서비스 제공하기에는 일정부분 어려움을 갖고 노력해왔다. 특히 최근 개별가족과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가의 사회적 책임 인식, 곧 기혼취업여성가족의 자녀양육 보조, 노인단독가구 위한 재가복지서비스실천 프로그램 제공, 가족·사회·학교의 원활한 소통의 필요성 인식제고가 절실하다. 더불어 사회환경 변화 따라, 가족구성원 비롯하여 각 구성단위별 사회집단의 인식이 변화해야 할 상황이라는 변화 흐름을 수용하여 이에 대응 각 집단과 개인 가족구성원 함께 적응해가는 과정을 기획, 실천, 평가할 필요가 제기된다. 그리하여 이에 대응 사회복지정책 방향을 선회하여 종전에 요보호대상자 중심 보충적 서비스 공급 차원의 잔여적 개념의 복지정책을 지양하여 제도적 복지정책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가족형태 다양한 현실에서 획일화된 일괄정책은 그 실효 적어 순발력 요하는 대응 정책을 개발, 보편적 복지차원의 가족사회복지저책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현실이다.

이에 이 글은 이제까지의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접근과 달리 사회발전단계를 소급 우리나라 전통사회 곧 광복 이전 부계직계가부장전통사회와 부계양성평등전통사회의 가족생활을 살펴 후기산업사회의 가족사회생활 복지를 높이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현실과 규범을 비교, 살피려 한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당시 사회현실을 보이는 事例를 통하여 실재를 살핀다. 그리고 조선전시대를 관통하여 계속 보완하여 전시대 예치에 근거로 삼은 경국대전, 각사수교, 속편 등 보충한 대전회통, 대전통편의 기준 법전에서 禮曹 특히 그중 婚嫁 관련 항목을 우선 자료로 삼고자 한다.<sup>1</sup>

<sup>1</sup> 조선조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교 특히 주례의 古制를 본보기로 하여 복귀하고자 예교화를 치국 이념으로 한다. 그리하여 법제에 예제를 담아 이른바 예치를 통하여 다스린 바 혼례는 물론 상례 제례를 포함 관혼상제례의 규범을 지키도록 법제로서 강요하였다.

## 여성가족사회현실 살펴보기

성리학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하늘과 땅, 양과 음에 대응시킨다. 이는 본래 음양의 조화를 통한 상호보완을 전제로 하나 현실에서는 여성 일방의 종속과 희생으로 일면 드러난 역사 현실이 기록되어있다(국립중앙박물관,2003).

실제로 성리학 이념이 보편화하는 조선후기에 이 점은 현실화되었다. 혼인 후 여성이 남성이 거주하는 친영제(親迎制)가 확산되고, 아들의 출산은 의무처럼 강요되었다. 재산상속에서 딸의 권리는 약화하였으며, 출가한 딸은 더욱 그러하였다. 구타·간통의 처벌 등 혼인생활의 여러 면에서 부인은 남편에 비해 불리한 지위에 있었다. 특히 수절(守節)이 당연시되면서, 죽은 남편을 따라 죽거나 성폭행을 당했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열녀(烈女)로 인정되는 분위기였다. 여성에게 정절이란 아름다운 덕목이라기보다 개인 삶의 희생을 강요하는 도그마였다.

위의 인용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혼인생활의 불평등과 정절의 일방적 강요는 전 근대 어느 사회에서도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위 서술과 같이 전근대사회 전반 같은 현실은 아니었다 보여주는 사례가 최근 더욱 소개되는 경향이다. 조선후기 성리학이 보편화하면서 성리학 본래의 이념이나 법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여성의 지위가 크게 저하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전근대사회 전반 여성지위 가정생활 변화 굴곡 사례 예시하여 시간적 변화추이 고려, 조선시대 전반 그리고 조선조 17세기후반 이후 순서로 살펴본다.

### 조선조 초반 혼례비용 부담 등 가족생활 현실논의 사례

신부가 처음 시부모를 뵙는 날, 지나친 사치에 힘쓰므로 수레와 수행원으로 문이 팍차며, 성대한 술잔치가 베풀어지고, 거느리고 온 비복이 30여명이어서, 신랑 집에서 이를 대접할 양식마련이 매우 번거로울 뿐 아니라, 이로써 가난한 자는 빚을 내기에까지 이르니 그 폐단이 적지 아니합니다.

『朝鮮王朝實錄』世宗 9년4월 壬戌

우리나라 풍속에 남자가 여자집에 장가가는 일이 이미 오래된다. 그런데 지금 만약 여자가 남자집으로 시집 간다면 몸종, 의복, 家藏什物을 모조리 여자가 장만 하여야 하므로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꺼려한다. 만약 남자집이 부유하면 신부를 맞아들이는 것이 어렵지 않으나 빈한한 자는 그것을 전디여내기 어려우니 몹시 힘들

다. 그러므로 양가 다 이를 꺼린다<sup>2</sup>.

『朝鮮王朝實錄』世宗 12년12월 戊子

### 경국대전에 보이는 조선조 개국 당시 혼인예교화 지침

경국대전은 조선왕조 오백여년간 통용되어 온 기본법전이다. 이 경국대전보다 앞선 법전은 태조 7년(1398) 趙浚 등에 의하여 편찬된 경제육전이다. 「경제육전」은 高麗朝 禰王 14년(1388) 부터 태조 6년(1397)까지의 전후 10여년간의 受敎와 受判을 모은 조례선집이다. 「경제육전」이 편찬된 이후에도 새로운 受敎와 受判은 물론 계속되었다.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태종 7년(1407), 河崙 등에 의하여 「속육전」이 편찬 간행되었다. 그 이후에도 이직(1428), 황희(1433) 등에 책임을 주어 「속전」은 연이어 발간되고 그 때 더불어 등록도 함께 정리되었다.

요컨대 조선 건국초부터 세종연간까지는 「경제육전」이 준용된 바 그 이후 작업 편찬하여 준용한 경국대전 통한 예교화 법치과정과 비교된다. 즉 문종조 이후 條例選集에서 탈피하여 규범체계로서의 통합법전을 집성하려는 노력이 경주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세조 등극 이후 결집되어 <육전상정소> 설치, 통합법전 편찬에 집중하여 노력하여 《병술대전》 발간으로 일차본 발간하고, 다시 이를 보완 예종 원년(1469)에 《기축대전》을, 성종2년(1471)에 《신묘대전》을 편찬하였다. 그리하여 성종 16년(1485)에 조선왕조 기본법전으로 경국대전 지침 따라 비로소 시행되게 하였다.

남자의 나이 15, 여자의 나이 14세가 되면 바야흐로 혼가하는 것을 허한다[자녀의 나이가 13세가 차면 혼인을 의논하는 것을 허한다.] 만약 양가의 부모 중 한 사람이 오래된 병이 있거나 혹은 나이 50이 차고 자녀의 나이가 12 이상이 된 자는 관에 신고하여 혼가시킨다.

『經國大典』

사대부로서 처가 죽은 자는 3년 뒤라야 다시 장가 갈 수 있다. 만약 부모의 命에 의하거나 혹은 나이가 40이 넘어서도 아들이 없는 자는 일년 뒤에 다시 장가가는 것을 허한다.

『經國大典』

### 조선조 전반 출산장려 및 아동양육환경 개선조치

<sup>2</sup> 당시 서류부가혼은, 지배계급의 경제적 이해와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 대변. 15~16세기 경 남구여가 혼인풍습 고쳐 여자를 남자집에 맞이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부연함(조선의 관혼상제. 2004. 사회과학출판사. P.32 참조)

조선 세조대 왕명으로 「救急方」 의서가 편찬되었다. 세조 12년(1467) 6월 팔도에 구급방 각 2건을 배포하였으며, 성종 10년(1479) 2월에 본방서의 약재가 중국산이 많다하여 鄉藥醫方으로 개찬하기를 청한 바 있다.<sup>3</sup>

세종 16년(1434) 版殿醫監事 노중례에게 편찬하게 하여 鑄字로서 「胎産集要」 간행한 바 상권은 胎産教養의 법을, 하권은 嬰兒보호법을 담고 있다.<sup>4</sup>

### 조선조 後半 경국대전 및 각사수교 교지 통한 가족생활 규범세우기 예교화 조저

사족의 딸 중에 나이 서른살이 가까워도 빈곤하여 아직 시집가지 못한 자에게는 본조에서 제를 올려 윤택여쭙어 비용과 물자를 지급하게 하였습.

『經國大典』 戶曹

사족의 딸에서 서른살이 넘도록 시집가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그 가장을 중죄로써 다스린다.

『經國大典』 戶曹

시집갈 나이가 지난 자는 한성 그리고 각 도에 엄격하게 그 가장 심한 자를 찾아서 호조와 영음으로 하여금 특별히 돕도록 하였다.

『속대전』 권지3

조선왕조 개창 당시 착수하여 그 당시 성리학적 이념 따라 신진사류 예교화에 정몽주·맹사성·양성지 등등 함께 참여 주도, 태조대 시작하여 세조 12년(丙戌) 반포한 『經國大典』에는 보이지 않던 조항이, 성종 16년(1485)의 乙巳大典에 收載되어 당시 혼례에 남가 여가 두루 불밝히는 거화의 갯수까지 한정하였다<sup>5</sup>. 이품 이상이면 10개정도로, 삼품 이하이면 6개로 제한하는 바 이 당시 혼례규모의 호사스러움을 경국대전 법조문에 밝히어 사대부들의 생활규범을 통제, 서민층의 본보기에서 흠어지지 않도록 명문화하였다.

이에 앞서 태조 5년 각 품관의 正妻에게 관작을 주게 하였다.

봉작은 남편의 관직에 따른다. 각기 품위에 따라 一品은 郡夫人, 二品은 縣夫

<sup>3</sup> 뒤에 선조 34년(1601), 허준이 이 책을 언해 개찬하여 내의원에서 간행, 언해두창집요발문에 기록되어 전한다 하고, 「언해구급방」은 중풍 등 일상 구급에 필요한 70여가지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함.

<sup>4</sup> 「胎産要錄」이라고도 함. 선조 41년(1608) 허준 등에게 명하여 「諺解胎産集要」를 편찬하게 함. 경국대전에는 이외에도 태교, 출산관련하여 분만 돕는 여성 지칭하는 ‘産婆’ ‘收生婆’ ‘接生婆’ 등의 용례와 출산지원 제도조치 발견된다.

<sup>5</sup> 세조 12년(丙戌) 반포한 『經國大典』에는 보이지 않던 조항 성종 16년(1485)의 乙巳大典에 收載되어 있음[婚姻炬火 二品以上十柄 三品以下六柄 女家同]

사에 봉한다. 정삼품 성균관대사성 이상은 淑人, 사품은 恭人, 오품은 宣人, 육품은 安人, 그리고 그외의 부인에 모두 孺人이라는 작호를 주게 하였다. 그리하여 正妻라고 하더라도 원래부터 살아온 자(室女)가 아닌 경우나 부인의 世系에 명백한 허물이 있는 자에게는 봉작을 허하지 않았다. 그러나 태종 17년 9월 郡夫人이 貞淑夫人으로, 縣夫人이 貞夫人으로 개칭되었다.

『經國大典』

봉작의 대상은 애초부터 정치에 한하였다. 재가한 자는 봉작하지 아니하고 개가한 자는 그 당시 여성생활규범 부덕에 어긋나는 일로 여겨 성종대 이르러 재가는 사실상 금지되었다. 실제의 가정생활에서 고려조는 물론 그 전대에는 여성의 재가가 그만큼 자유로움을 반증한다.

조선조 신진사류들은 고려말 사회경제 혼란과 정치사회 현실을 바로잡아 중앙 집권체제를 확립하고자 노력, 태조개국으로부터 태종대까지는 고려와 같이 吏曹, 兵曹의 기능 중시하여 기반 잡아갔다, 세종대부터는 周代의 古制에 복귀 禮曹 기능을 전대보다 중히 여기고 『周禮』를 정치·경제·법률 등 제 분야의 근거로 삼았다.<sup>6</sup> 《세종실록》「五禮」를 바탕으로 하여, 성종 5년(1474) 《國朝五禮儀》는 집대성되었다. 이는 왕실은 물론 사대부 비롯하여 일반 서민을 포괄하고, 서울[한성]뿐만 아니라 지방 州縣鄉村까지 포괄하여 국가 전체의 지배이념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經國大典』과 함께 조선사회 刑政(형정)과 예교화의 지배 근간을 이루어왔다.

양인이 私婢(사비)를 아내로 삼아 본처로 삼으면, 본인과 婚主(혼주:主婚者)는 다른 사람이 고발하는 것을 허락하고, 赦免(사면)이 지났는지를 논하지 말고 전가사변[全家徙邊:평안도·함경도의 변두리지역에 온 가족을 들어와 살게하는 형벌로서, 家舍(가사)를 官에서 몰수하여 本鄉(본향)의 근거를 없애어 나중에 돌아올 생각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조치]합니다. 중매쟁이는 장 100, 도 3년에 처하고 管領(관령)과 色掌(색장)은 장 100대를 치고 모두 물간사전[勿揀赦前:사면령이 있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라 해도 사면령에 따라 分揀합니다<sup>7</sup>.

「各司受教」

3. 조선조 초기 고려의 禮制와 唐의 오례 그대로 수용하다, 태종대에 와서 明의 『洪武禮制』를 기본으로 하는 개정 이루어지며 <儀禮詳定所>(태종2, 1402년) 설립, 이는 세종대 <집현전>으로 이어져 古制 즉 『주례』 연구 진전되어 《세종실록오례》로 정리됨.

7. 금하는 것을 어기고 혼인한 자를 고발한 사람에게 상은 면포로 헤아려주는 게 어떠할가합니다 가정 32년 7월 14일 계로 아뢰어 윤허받음 [一違禁婚娶者陳告人受賞 綿布以量給如何 嘉靖三二年七月十四日 啓依允]

### 大典會通<sup>8</sup>에 보이는 조선 후기 사회생활지침 예교화조처 근거

예조 혼가 항목에 한하여 비교해 보면 전반부 동일하여 후대 사회변화 따른 사례 추가한 사실 확인된다. 그중 본고 논의에 연관되는 것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신부가 구고에게 알현할 때에는 슬 한동이 안주 다섯 바구니 從婢 3인, 노복10인을 거느리고 간다.[당상관의 딸은 종비 4인, 노복 14인]

『大典會通』

위의 기록에 부가하여 대전 속편 『大典會通』 혼가 항목에는 다음의 규제조처 밝혀 예치의 기준 제시한 바 있다.<sup>9</sup>

‘왕자의 여로서 길례를 지낼 때에는 본가와 주혼가에서 법에 넘치게 사치하는 일은 모두 금단한다’는 종친의 본보기 행동을 더욱 강조하여 예교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며, 이를 『大典會通』에 반영, 실로 조선 전시대를 통하여 법제·관행 등 사회현실을 볼 수 있는 근본사료일 뿐 아니라 그 이전의 한국사회문화를 관통하는 특징을 파악 이해하게 하는 귀중한 자료라 하였다.

혼인은 가례에 의하여 지내되 이미 기약하여 납폐한 뒤일지라도 양가 부모의 상이 있게 되면 또한 3년을 기다리되 위반하는 자에게는 家長은 杖一百度로 한다.

『大典會通』

혼인은 한결같이 “가례를 따르되, 혼례식 2~3개월 전에 납폐를 행한 뒤 비록 양가 부모상 당하면 3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가장을 논죄한다.[1658년(효종 9, 순치 무술)에 받은 전교]

「受教輯錄」

<sup>8</sup> 『大典會通』 고종 2년 乙丑(1865) 補輯刊行 .(韓國古典國譯叢書 제 1집. 1960년 4월 한국 고전국역위원회 고려대학교출판부), 경국대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5) 譯註 관련조문 비교참조 부기함. 대전회통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조 말기의 법전임. 우리나라 고래로 여러 법령이 시행되어 온 사실 삼국사기에 나타나는 바이며, 차츰 정비되어 법전 편찬 여러 차례 이루어져 경국대전 이후 이를 증보 합편한 것이 대전회통이며, 다시 새 조례 등 보충 집대성한 것이 바로 대전회통임.

<sup>9</sup> 고종 2년 새로이 사신 찍어 반포할 때 先代 靈廟御製御筆 함께 실어 후대 백성들에 가르침[一心乃公爲官擇人.修學五禮 無墜舊典]전함 .

혼기를 넘긴 미혼자는 2년 마다 한번씩 연초에 혼인을 도와 혼인시키도록 금지한다.  
『대전통편』

대개 혼가의 시기가 넘은 자에게는 한성부와 諸道에 嚴飭하여 거기에서 尤甚한 자를 수색하고 戶曹와 營畝으로 하여금 특별히 顧助하게 한다.

자신이 상중에 있고 그의 아들이 碁服이 未盡한 자로서 혼례를 빨리 지내게 되면 不謹居喪律로써 논죄한다.

『大典會通』

부모가 비록 상중에 있더라도 자녀의 복상기간이 끝나고 혼사를 주관할 사람 있으면 변통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아들의 기년복이 끝나지 않았거나, 딸이 상중에 있는데도 성급하게 혼례를 시행하는 경우 그 가장을 不謹居喪律, 곧 居喪에 참가하지 않은 데 대한 형률로 논한다.[1641년(인조 19, 송덕 신사)에 받은 전교]

『受教輯錄』

역적의 집 손녀는 이혼하지 못하게 한다. 『大典會通』

통념과 달리 여성의 이혼은 전대 고려조에서도 일정부분 규제를 가하여 가정을 안정시키려는 국가 의지가 표현되어왔다. 고려시대 부부는 쉽게 이혼할 수 없었으며 부당하다고 여기는 기준에 부응하면 일정 정도 제재를 가하였다 한다. 부모와 합의 없이 마음대로 처를 버린 자는 벼슬을 빼앗고 일정한 지역에서만 살게 하였다. 한편 처가 마음대로 집을 떠났을 때는 徒刑 2년에 처하고 남편 몰래 재가하면 2천 리 밖으로 귀양을 보내며 이들에게 장가든 자도 마찬가지로 같은 죄를 주었다<sup>10</sup>. 뿐만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여 상처를 입히거나 도구를 사용 상처를 내면 곤장 80대, 이 하나를 부러뜨리면 곤장 90대를 치는 등 자세한 규정을 제정하여 어느 시대 막론 남녀 한데 합하여 가정생활 지속하는 현실이 간단하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다.

경국대전 혼인연령남자 15세, 여자 14세 규정은 실제와 일정 정도 부합되는 조혼 환경이었음에도 실제사례 경상도 단성현(1717년) 호적분석 결과 보면 14세 이하 혼인사례 볼 수 없다.<sup>11</sup> 1900년대 초반 일제강점기 20세 이전에 혼인하는 비

<sup>10</sup> 『高麗史』 권84 지 제 38 형법1. 戶婚.

<sup>11</sup> 남자 최하연령 16세, 여자 최하연령 17세, 남자 평균연령 25.2세, 여자평균연령 20.7세임. 또 20세기 초반 통계 보면, 17세미만 결혼 남자 7.8%(1925년), 14.4%(1932년), 남자 17~20세 결혼 37.1%(1925년), 31.4%(1932년)이고 15세미만 결혼 여자 17.2%(1912년), 6.8%(1925년), 15~20세 결혼여자 50.4%(1912), 59.9%(1925년), 67.2%(1932년)로 추이 보임김두현. [조선가족제도사연구].



을 남자 50%가까이 , 여자는 70%정도이다. 당연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 부유층 비해 혼인연령 낮은 사실은 어느 사회이고 차이 없다. “남녀 일찍 혼인하여 부부간 지켜야 할 예의범절 채 알지못하고 아들딸 낳으며 남편 일찍 아내 잃고 홀아비 되는 경우 적지않은데, 이는 혼인연령을 제한한 법적규제를 지키지 않은 데 있다”(중종 12년 9월 戊子) 한 바 조혼 폐해 논한 사례는 최근의 만혼 경향 혼인연기 현상과 대조되어 시대사회환경 변화를 실감하게 하는 예시이다.

**부계가부장사회의 여성가족사회문화복지 사례-조선사회문화 복원 ‘한학촌’의 결혼식 주변 웨딩문화트렌드 종합논의 자료 함께附;**

농사짓기와 집안일돌보기;身分. 자연여건(산촌·어촌 등) 집 문화; 家族·친족構成 따라 다름

**자녀출산 양육, 봉양**

**의식주생활관리**

봉제사접빈객

옷짓기 빨래하기 다림질하기 염색 다듬이질..

음식장만

집안돌보기

**여가문화** : 歲時文化 즐기기. 刺繡농기. 붓글씨, 歌辭베끼기, 편지쓰기. 그림그리기,

나오며,

서언에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화과정, 그리고 산업화후기 사회변화 겪고, 국제화 사회 다문화가족 논의 함께하는 최근, 한국사회는 특히 혼인 연기로 인한 만혼 경향과 저출산, 고령화사회 추세 맞이하고 있다.

이 맥락에서 전통사회의 혼인권장책 특히 경국대전 비롯한 법제를 통하여 혼례 관련한 강제 조항 살피어 혼례문화가 결코 개인 또는 가족의 자발적인 행동만은 아니었음을 살펴 보았다. 더구나 혼비 조달의 어려움을 겪어 혼기가 늦어지는 경우, 혼례 의식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이는 경제 부담이자 동시에 예교와 예치 함께하는 사회 맥락에서 가족에게 힘겨운 과제로 부가된 사례 적지 않음을 살펴 보았다. 또한 국가 차원 법제를 마련 이들을 지원하는 조처 통하여 개인생애, 가족주기과정에서 혼례가 경제적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주요 과제이기도 한 것이 예나 오늘의 만혼 추세 현실에서나 마찬가지로라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오늘날 사회문화적으로 혼인 그리고 혼례를 순조롭게 하기 위한 노력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음을 함께 통시대적으로 살피며 남녀 맺어지는 혼인, 혼례의 보편 이치의 일단을 본다. 다

만 예전의 가족 중심이 오늘 개인 중심으로 변한다 하는 담론 있고, 이에 새삼 음미하게 된다.

현금 물질 풍부한 자본주의 혼례문화 트렌드 함께 살피면, 세계화 정보화 함께 하는 현실에서 각자 자신 놓인 상황에서 목소리 내며 미래생활 준비하는 데 서로 의사소통하여 보다 활발한 교류 기회 통하여 복지, 곧 삶의 질 유지 위해 적절한 노력 선택 필요하지 않은가 한다. 최근 혼례문화는 소비문화 향상 여파 물질주의 풍부한 만큼 더욱 각자가 처한 상황에 맞는 선택을 도울 복지서비스 교육이 함께 필요하다고 본다.

[참조]21세기 한국남쪽사회 지방 여성가족사회문화 복지정책 연안 一部 검토 例

- 1.가족서비스다양화1.1.경제적지원-아동수당.이혼가정 아동양육보조
  - 빈곤가족예방 자활교육 지원
- 1.2.가족지원서비스다양화-다양한 가족유형 서비스 다원화
  - 한부모가족. 결혼이민가족지원등
- 2.안전한가족생활보장2.1.임신출산 사회보호기반 확립-태아,임산출산부 안전환경
  - 2.2.생애주기별 가족건강도모-여성,청소년,노인 가족건강환경
  - 2.3.가족폭력예방·안전환경조성-가정폭력 예방체계노력
- 3.가족문화조성;가족유대 -건강가족여가문화. 주부 사회연계 지속가능 생활환경협동운동
- 4.돌봄노동사회분담화-가족양육 사회지원-국·공·민간보육(시설) 公共性 교육
  - 방과후 보육서비스 제공
  - 아버지 돌봄기회 제공-아버지출산휴가 육아휴직 아버지시간 연장
  - 가사돌봄노동 가치평가♥
- 5.가족친화환경조성5.1.가족친화기업 조성-가족친화 직장프로그램교육
  - 5.2.가족친화지역환경-돌봄서비스 지역사회 캠페인
  - 가족단위 자원봉사운동 확산♣
- 6.가족정책인프라구축 -정보 共有 -민·관 및 중앙·지방 협력 조정
  - 가족관련법제 순화 및 완화;가정문화전승창조
  - 가족관련 실태 및 정책 욕구조사 연구 先行